

항 소 장

- 사 건 2018가합568134
- 항 소 인 1. 비욘드캐피탈소셜대부 주식회사
(원 고)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37길 5, 302호(논현동, 태양빌딩) (06109)
사내이사 서준섭
(핸드폰: 010-6270-**** 이메일: isubsist@beyondplatform.co.kr)
- 피 항 소 인 1. 아시아신탁 주식회사
(피 고)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, 13층(대치동, 케이티앤지 타워) (06176)
대표이사 배일규

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.10.11.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19. 10. 14.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.

원판결의 표시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항 소 취 지

1. 원판결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6,89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, 5,3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7. 25.부터 2018. 7. 31.까지는 연 17%의, 2018. 8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7.9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4. 소송비용은 1,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항 소 이 유

추후 제출하겠습니다.

2019.10.16

항소인(원고) 소송대리인
법무법인(유한)지안
담당변호사 송재순

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(합의) 귀중

열람용